

 <b>국토교통부</b>		<b>보 도 자 료</b>	
		배포일시	2018. 4. 20(금) / 총 4매(본문2)
담당 부서	자동차운영 보험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상일, 팀장 김승범, 사무관 김현철 • ☎ (044) 201-4871, 4873
보 도 일 시		2018년 4월 23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22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7월 출범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, 초대 원장 공모 택시·화물·버스 등 6개 공제조합 보상서비스 및 재무건전성 제고 지원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‘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)’ 초대원장을 4월 23일(월)부터 5월 8일(화)까지 공모한다.
  -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진흥원은 택시, 화물, 버스,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6개 공제조합(87만대 가입)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고 검사하게 되어 공제 조합원과 국민들의 자동차 사고 보상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.
  - 또한, 연간 공제금액(보험금)이 1조 5천억원(‘17년 기준)에 이르는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검사, 공제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도 수행하여 ‘79년 법인택시를 시작으로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공제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.
  - 그동안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 진흥원 설립 근거가 마련(‘16.1월)됨에 따라 20여회의 운수단체 면담, 10차례의 진흥원 설립 준비회의 등 운수단체/공제조합과 소통하며 진흥원 설립에 합의했으며 올해 7월 개원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.
- 진흥원은 기획관리부, 공제감독부, 연구지원부 등 3개 부 20여명으로 구성되며, 원장과 비상근이사 8인이 주요 업무를 심의·의결하고 감사 1인이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게 된다.

-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3년으로,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.

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준비단은 교통·금융·보험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지원하면, 이 가운데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심사, 이사회 추천 등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.

□ 공모 지원자는 지원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4월 23일(월) 9시부터 5월 8일(화) 18시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.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 molit.go.kr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\*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준비단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보험과 김현철 사무관(☎ 044-201-487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**주요 업무**(자배법 제39조의4, 영 제11조의2)

- 자동차공제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
-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수립·추진 지원
-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연구
-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  -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교육 및 홍보
  -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수집·관리
  -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한 정책 연구 지원

□ **조직 및 인력**(자배법 제39조의5)

- (임원) 원장 1명, 이사 8명(이사장 포함) 이내, 감사 1명
  - (원장) 원을 대표, 이사회 추천받아 장관이 임명, 임기 3년(1회 연임可)
  - (이사) 장관이 위촉, 임기 3년(1회 연임可)
  - (이사회) 원장, 이사 8명(공무원 1인 포함)으로 구성, 주요업무 심의·의결,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

## &lt; 이사 자격 요건 (시행규칙 제11조의3) &gt;

- (장관 지명) 자동차 공제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 1명
- (장관 위촉)
  -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통·금융·보험·법률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(職)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-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- 교통·금융·보험·법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□ **법적근거**

-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60·61조, 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51조

□ **공제사업**(여객법 제64조)

-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
-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
-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

□ **공제조합 현황**

(‘17.12월말 기준)

구 분	택 시	개인택시	버 스	전세버스	화 물	렌터카
설립일자	'79.6.20	'93. 2. 1	'81.12.24	'97.12.24	'81.7.1	'12.11.15
설립근거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	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조 직	본부외 16개지부	본부 및 16개지부	본부 및 16개지부	본부 및 16개지부	본부 및 15개지부	본점
근무인원	494명	427명 (본부33명)	447명 (본부40명)	184명	612명	279명 (본점74명)
사업형태	연합회 부대사업					독립법인
전담지부장제	미시행		시행예정	시행('17.8)	시행('91.7)	시행(설립시)
회계형태	지부별 독립채산제*			전국 채산제	지부별 독립채산제	전국 채산제
가입대수 (가입률)	88,723 (100%)	159,148 (97%)	42,956 (97.9%)	41,044 (96.5%)	182,599 (93.3%)	352,351 (48.1%)
수입분담금 (보험료, 백만원)	258,238	208,841	205,435	81,954	455,363	269,240

\* 광역 시·도별로 분담금(보험료), 공제금(보험금)을 자체적으로 산정·결정